

##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-0219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7. 9.

국가기술표준원장

### 전기용품안전기준 5종 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-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(WTO/TBT, IECEE)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

#### 2. 주요 내용

##### 1)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

순번	구분	안전기준 번호	안전기준명
1	개정	KC 60745-2-1	전기 드릴 및 임팩트 드릴의 개별 요구사항
2		KC 60745-2-2	전기 스크류드라이버 및 임팩트 렌치의 개별 요구사항
3		KC 60745-2-6	전기 해머의 개별 요구사항
4		KC 60745-2-9	전기 태퍼의 개별 요구사항
5		KC 60745-2-13	전기 체인 톱의 개별 요구사항

## 2) 주요 개정 내용

-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
  - (KC 60745-2-1)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-2-1 ed 2.1 도입
  - (KC 60745-2-2)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-2-2 ed 2.0 도입
  - (KC 60745-2-6)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-2-6 ed 2.2 도입
  - (KC 60745-2-9)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-2-9 ed 2.1 도입
  - (KC 60745-2-13)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-2-13 ed 2.1 도입

※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([www.kats.go.kr](http://www.kats.go.kr) → 고시·공고)

## 3. 의견제출

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※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

- 주 소 :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,  
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
- 전화번호 : 043-870-5446 (FAX: 043-870-5676)
- 전자우편 : salvatore@korea.kr